

6. 賃貸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中 改正令(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제1992-76호 1992. 7. 2

□ 개정이유 □

'88년부터 시작된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주택가격은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전·월세가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하여는 전·월세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므로 10호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임대전문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료등을 신고하게 하므로써 임대주택산업의 활성화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법에서 위임된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동일 시·군지역에서 10호이상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로 하고 그 등록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 임대전문업자의 자격을 10호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의 수에 따라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함.
- 다. 임대전문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거나 임대전문업자가 직접 주택관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능력과 동등한 기술능력을 보유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미분양주택(미 임대주택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임대전문업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마. 임대조건의 신고대상 임대주택을 임대전문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임대주택의 호수와 동일하게 10호이상으로 하고 그 임대조건이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임대조건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고서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주택국장, 전화 503-73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